산림조경학과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및 종합시험 내규 시행세칙

2019년 9월 2일 신설
2024년 1월 30일 개정

목적

이 내규는 건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2조의 6호에 따른 산림조경학과의 종합시험에 필요한 사항 및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제26조의 1호에 따른 박사학위과정생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박사과정의 경우 SCI(E)급 국제저명학술지 공동저자(교신저자 포함)이상으로서 논문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2024.1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부터 적용)

2. 종합시험

가. 응시자격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끝낸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나.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학과가 지정하는 시기(매년 3월 또는 9월)에 종합시험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시험과목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학과 주임교수는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시험위원은 출제 방향, 문항별 배점, 평가 기준 등을 출제한다.

라. 출제방법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마. 합격인정 점수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바. 시험시기

종합시험의 시행 시기는 3월과 9월에 실시한다.